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76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오세희·박희승·전진숙

황 희・김교흥・문진석

김태선 · 김태년 · 김동아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12.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 · ② (생	종합계획 수립)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및 인		
	공지능 기술 활용 촉진에 관		
	<u>한 사항</u>		
<u><신 설></u>	12.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에 관한 사항		
<u>11.</u> (생 략)	<u>13.</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